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9. 2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1997. 10. 27

다. 상 정 일 자 :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 10. 29)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박 경 국)

가)세입세출결산 총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002,958,410	1,058,374,647	858,697,777	199,676,870
일 반 회 계	740,521,732	786,219,170	668,157,547	118,061,623
특 별 회 계	262,436,678	272,155,477	190,540,230	81,615,247
공 영 개 발 사 업	84,956,804	86,719,817	58,405,768	28,314,049
지 역 개 발 기 금	143,434,032	151,349,272	106,108,543	45,240,729
의 료 보 호 기 금	20,544,385	20,584,731	20,325,343	259,388
농 어 촌 소 득 개 발 기 금	3,617,880	3,617,882	3,617,000	882
대 청 호 대 책	2,083,577	2,083,671	2,083,576	95
증 평 공 업 단 지 조 성	7,800,000	7,800,104	0	7,800,104

○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위와 같음.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002,958,410	1,077,407,502	1,058,374,647	2,329,975	16,702,880
일 반 회 계	740,521,732	805,252,025	786,219,170	2,329,975	16,702,880
특 별 회 계	262,436,678	272,155,477	272,155,477		
- 공기업	228,390,836	238,069,089	238,069,089		
· 공영개발사업	84,956,804	86,719,817	86,719,817		
· 지역개발기금	143,434,032	151,349,272	151,349,272		
- 의료보호기금	20,544,385	20,584,731	20,584,731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3,617,880	3,617,882	3,617,882		
- 대청호 대책	2,083,577	2,083,671	2,083,671		
- 중평공업단지조성	7,800,000	7,800,104	7,800,104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 29억 5,841만원 대비 105.5%인 1조 774억 750만 2천원이 징수결정되었음.
- 미수납액 167억 288만원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음.
- 불납결손액 23억 2,997만 5천원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음.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02,958,410	910,746,482	858,697,777	78,776,696	65,483,937
일반회계	740,521,732	720,036,119	668,157,547	58,733,233	13,630,952
특별회계	262,436,678	190,710,363	190,540,230	20,043,463	51,852,985
- 공기업	228,390,836	164,684,444	164,514,311	12,243,463	51,633,062
· 공영개발사업	84,956,804	58,575,901	58,405,768	12,243,463	14,307,573
· 지역개발기금	143,434,032	106,108,543	106,108,543		37,325,489
- 의료보호기금	20,544,385	20,325,343	20,325,343		219,042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3,617,880	3,617,000	3,617,000		880
- 대청호대책	2,083,577	2,083,576	2,083,576		1
- 증평공업단지조성	7,800,000	0	0	7,800,000	0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29억 5,841만원 대비 평균 85.6%인 8,586억 9,777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90.2%,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72.6%임.
- 예산현액이 전년도('95)보다 전체 568억 7,905만 6천원, (일반회계 738억 2,458만원 중, 특별회계 169억 4,552만 4천원 감)이 증가 하였고, 집행율도 0.7%(일반회계 1.9% 중, 특별회계 8.9% 감) 가 증가하였음.

3. 계속비 · 명사이월비 · 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수정용역비의 67건에 787억 7,669만 6천원으로

- 계속비 : 도립옥천전문대학건립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중평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89억 6,614만 9천원
- 명사이월비 :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비의 14개 사업에 84억 7,928만 1천원
- 사고이월비 : 국가지원 지방도확 · 포장사업(공기부족)등 47건의 사업비 412억 8,780만 3천원임.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6건 200억 4,346만 3천원으로서,

- 계속비 : 2건에 198억 1,254만 5천원
- 명사이월비 : 2건에 6,078만 4천원
- 사고이월비 : 2건에 1억 7,013만 4천원임.

4. 채권·채무결산

(1) 채권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96년 발생	'96년 소멸	당해년도말 현재액
합 계	244,907,513	178,075,030	137,885,327	285,097,216
일반 회 계	21,011,398	38,399,371	27,935,966	31,464,803
특별 회 계	223,906,115	139,675,659	109,949,361	253,632,413

(2) 채무증감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95말 잔액	'96년 발생액	소계	'96 상환액	'96말 잔액
합 계	263,527,662	90,909,573	354,437,235	66,572,202	287,865,033
지방 채	253,550,488	90,552,733	344,103,221	57,928,694	286,174,527
채무부담행위	7,000,000	0	7,000,000	7,000,000	0
해외차관	2,977,174	356,840	3,334,014	1,643,508	1,690,506

5. 재산결산

(1)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용도	전년도말 현재액	'96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347,981,906	38,048,301	21,061,613	364,968,594
행 정 예 산	291,066,205	32,304,530	16,738,991	306,631,744
공 공 용 재 산	39,757,040	11,030,205	115,440	50,671,805
공 용 재 산	228,975,187	19,190,627	15,345,152	232,820,662
기 업 용 재 산	22,333,978	2,083,698	1,278,399	23,139,277
보 존 재 산	21,865	-	-	21,865
잡 중 재 산	56,893,836	5,743,771	4,322,622	58,314,985

(2) 물품조사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정 수	전년도말 보유현액	당해연도 증감실정		
			취 득	처 분	보유현황
수량(점)	4,608	2,886	548	284	3,150
가액(천원)		24,420,935	5,010,337	1,238,124	28,193,148

- 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으로서, 동법제104조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작성등)에 따라 199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보고한 내용임.

6. 기금결산

○적립기금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적립액			'96년도 사용액	'96년도말 현재액	근거
	'95년까지	'96년도분	계			
계	27,210,381	34,137,313	61,347,694	22,536,937	38,810,757	
문화예술 진흥기금	4,979,327	688,660	5,667,987	326,987	5,341,000	도문예진흥기금조성설치 운영조례
생활보호기금	74,170	8,501	82,671	0	82,671	생보법 제37조 및 도운영 관리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002,017	55,771	1,057,788	55,771	1,002,017	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재해구호기금	5,017,225	1,003,629	6,020,854	35,705	5,985,149	재해구호법제15조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107,660	19,351	127,011	0	127,011	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청소년장학 기금	21,959	3,983	25,942	4,000	21,942	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1지역1명품 육성기금	0	400,000	400,000	400,000	0	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조례
자동차운수 사업발전기금	3,049,218	421,083	3,470,301	342,000	3,128,301	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규정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4,447,681	29,292,670	33,740,351	18,131,400	15,608,951	동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례
노인복지기금	218,471	253,466	471,937	0	471,937	노인복지법 제4조
식품진흥기금	3,466,419	1,415,344	4,881,763	1,473,374	3,408,389	식품위생법
중소기업구조 개선기금	4,684,991	541,286	5,226,277	1,761,000	3,465,277	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평출장소)	(141,243)	(33,569)	(174,812)	(6,700)	(168,112)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28,669	16,166	144,835	6,700	138,135	본청분과동일
청소년자립 지원자금	12,754	17,403	29,977	0	29,977	본청분과 동일

상기적립금은 적법하게 적립되었으나, 일부 기금이 관리방법을 규정한 조례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 및 보고 방법을 일원화하도록 지적한 사례가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잔액증명과 상이없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음.

7. 금고결산

○ 잉여금처분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계잉여금	잉여금처분내역		
					이월사업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058,374,647	858,697,777	199,676,870	78,776,696	186,430	120,713,744
일반회계		786,219,170	668,157,547	118,061,623	58,733,233	186,430	59,141,960
특별회계	소계	272,155,477	190,540,230	81,615,247	20,043,463	0	61,571,784
	의료보호기금	20,584,731	20,325,343	259,388	0	0	259,388
	농어촌소득개발	3,617,882	3,617,000	882	0	0	882
	대청호특별대책	2,083,671	2,083,576	95	0	0	95
	중평공업단지조성	7,800,104	0	7,800,104	7,800,000	0	104
	공영개발	86,719,817	58,405,768	28,314,049	12,243,463	0	16,070,586
	지역개발기금	151,349,272	106,108,543	45,240,729	0	0	45,240,729

○ 일반회계

- 총수입액이 7,874억 3,492만 2천원이었으나 과오납금 12억 1,575만 2천원을 반환하고 실수납액은 7,682억 1,917만원이었고,
- 총지출액은 6,694억 1,446만 6천원이었으나 지출금액중 12억 5,691만 9천원을 반납 받음으로써 실지급액은 6,681억 5,754만 7천원으로 1,180억 6,162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외 5개 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2,721억 5,547만 7천원이었고, 총세출결산액은 1,905억 4,023만원으로 816억 1,527만 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8. 검토보고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재 평)

□ '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보고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몇가지 시정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 7,405억 2,173만 2천원의 106.2%인 7,862억 1,917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3,956억 2,538만 2천원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할 수 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서 33.2%, 세외수입에서 목표액보다 4.5%가 초과징수하였는바, 이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몇가지 사항을 지적해보면,

첫째, 지방세 예산과소추계 및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세목표액 1,477억 4,100만원 대비 1,968억 6,725만 7천원을 수납하여 491억 2,625만 7천원을 초과징수한 것은 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 노력 때문이기도 하나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과소책정한 결과로 볼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초과징수한 예산은 예산총계 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많은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로 세입이 발생하는 모든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세입과목 분류 부적정

징수관은 세입을 징수결정할 때 세입과목을 정확히 분류, 세입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사용료 수입인 자동차관리 통신회선 사용료등 2건에 369만 4천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부적정하게 분류하였으므로 징수결정시 세입과목 분류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임.

셋째, 지방세 부과처분 지연

취득세 부과대상 물건을 매각할 경우 등기필통지서 및 계약서 검인과정을 통하여 신고·납부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신고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조기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체납시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주) 서흥건설등 2개 업체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취득세 부과 및 재산압류가 5~14개월 지연됨으로써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법원 경매 종결후 무재산사유로 결손처분되는 등 2억 6,100만원의 세수 결함을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고액 부과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치 않을 경우 즉시 지방세를 부과하고 체납시 재산압류를 통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24억3,667만 8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721억 5,547만 7천원으로 10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세출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405억 2,173만 2천원중 6,681억 5,754만 7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은 '95년 88.3%보다 1.9% 높은 90.2%가 되었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 사업의 억제 및 경상경비의 절감등 건축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나, 몇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

농촌진흥원이 “충북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동식물을 발굴하여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미리 사업계획을 정하여 세출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시험국 세출예산 재료비 4억 3,251만 1천원에서 2회에 걸쳐 9,997만 3천원을 일반 수용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이는 사전 계획성 없는 무리한 운영으로 세출예산 전용을 소홀히 하였을뿐만 아니라 전용액 만큼 재료비 세출 예산액을 과다 계상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예산액 책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세출예산액 판단 소홀

세출예산운영에 있어서 추가경정의 사유가 발생되면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96. 2. 14일 통합된 농축산사업소에서는 직원의 봉급인 기본급의 소요액 판단 소홀로 '96. 12. 23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1,457만 8천원을 삭감한 후 부족액이 발생하여 '96. 12. 20일에 1억 3,572만 8천원을 다른 과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액 판단을 소홀히 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함.

셋째, 보조금 교부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중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교부해야 하는바, '96. 8. 4 「충북 100년 경축음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흥행업을 대행하는 21세기 기획사에 대행보조비로 7,98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96 불우이웃돕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불우이웃돕기 협의회에 각각 지출한 바, 이 두협의회는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어 단일기관에만 교부함이 타당함에도 2개기관으로 분리하여 교부(4,900만원)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넷째, 세출예산액 관리운영 부적절

'96년도 예산액 6,770억 3,192만 2천원중 불용액은 예산액의 2%인 136억 3,091만 2천원이며, 불용액중 예산계상후 50%이상 집행잔액 4억 797만 1천원과 사유미 발생 12억 1,226만 2천원등은 세출예산 집행도중 여건변동,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등으로 예산집행잔액이 사전예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재원 부족으로 해결치 못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등으로 활용하는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세출예산 계속비제도 활용 미흡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은 그 총액과 연부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산림환경사업소의 수목원 조성공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공사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위 : 천원)

총공사비	공사예정기간	'96 집행내역			'97이후 집행액
		계약금액	선금금 지급액	지출액	
2,772,000	'96~'99	742,827	371,404	375,205	2,029,173

여섯째, 재산관리 불합리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의 증가란에 계상 표시한 후 잡종재산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하나 행정재산의 감소로 처리, 공유재산의 증감내역을 적정히 표시하지 아니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일곱째,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방법 미흡

기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해연도말 기준 현재액과는 별도로 식품진흥기금 용자예치금 잔액 183만 5천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금 잔액 4,994만 6천원을 관리하고 있음은 기금관리 업무의 총괄기능이 미약한 탓으로 보이며, 또한 각종기금의 관리방법을 규정한 조례상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청소년장학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등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세입과 세출을 관계기금출납원이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와 결산보고의 일관성 및 결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9. 주요지적사항

○ 없음.

10.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가결

11. 소수의견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 부 : 1.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부.
2. 충청북도 세입결산승인(안) 1부.
3. 충청북도 세출결산승인(안) 1부. 끝.